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개량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개량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개량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개량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개량계원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개량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해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개량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해자의 수가 5인이상일것
2. 수해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것

제5조(개량계의 등록)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개량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개량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개량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개량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개량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량계원의 자격) 개량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량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개량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개량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개량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개량계에는 임원으로 개량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개량계장은 개량계를 대표하며 개량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개량계의 임무) ① 개량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개량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개량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량계원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계원에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개량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개량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개량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개량계"로 본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량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량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량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개량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개량계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개량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개량계는 매 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개량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도개시 3월전까지 개량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개량계장은 다음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개량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량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개량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개량계의 해산) ① 개량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량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해지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해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개량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 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개량조합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개량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개량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개량계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 ② 도지사는 개량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량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관리
2.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량계의 조직
3.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량계의 등록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제출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한 승인
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재조정 및 재결에 관한사항
8.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9. 제15조 규정의 개량계의 해산에 관한사항
10.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1989. 3. 14 농림수산부령제1021호)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개량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